검토사항 적합 여부 대상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예 아니요 공제대상 ① 경력단절여성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(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) 결혼･임신･ 출산･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② 퇴직한 날부터 3년\*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\* ’22.1.1.이후 고용하는 경우부터 퇴직 후 2년 이상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･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예 아니요 공 제 대 상 ② 육아휴직복귀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(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) ② ｢남녀고용평등과 일･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･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예 아니요 공제대상 인건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아래 금액 제외 ① ｢소득세법｣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｢소득세법｣ 제29조 및 ｢법인세법｣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｢소득세법 시행령｣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예 아니요 공제율 아래 구분의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 30% 15% 육아휴직 복귀자 예 아니요